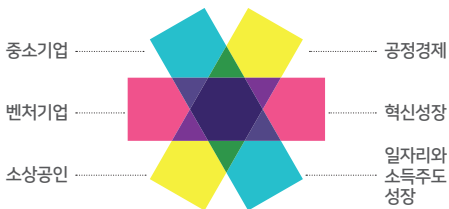




2019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이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중소기업의 '따뜻한 대변인',
 소상공인의 '친근한 동반자'의 취지를 담은
 중소기업부의 '달려라 중기씨 BI'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무엇이든 ☎1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이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100

이 책을 펴내며

중소기업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우리경제의 근간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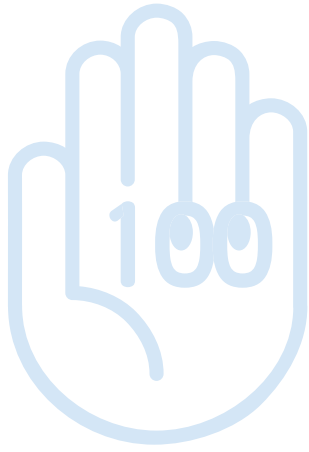
중소기업 정책과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며 중소기업이 공감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책자의 발간은 기업인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014년 처음으로 중소기업 CEO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책 100개를 엄선하여 「내 손안의 정책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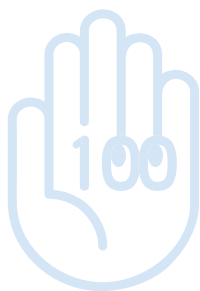
올해에는 일반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자신에 맞는 정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따라 정책을 분류하여 개정판을 발간합니다.

이 책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짜 정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PDF, E-Book 형태로도 제공하여 현장에서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사업 성공에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100 Things for CEO



이 책에 수록한 내용

I. 일반 중소기업 1

- ① 일자리·인력 지원
- ② 기술(R&D) 지원
- ③ 정책금융 지원
- ④ 수출 지원
- ⑤ 판로 지원
- ⑥ 경영 지원·동반성장 지원 등

II. 창업·벤처기업 81

- ① 창업기반시설(제도) 및 교육
- ②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③ 창업 후속 지원
- ④ 재도전 지원

III. 소상공인·전통시장 119

- ①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지원
- ② 소상공인 재기지원
- ③ 전통시장 지원

부록. 도움이 되는 제도 및 지원기관 141

- 01. 중소기업 범위 기준
- 02. 중소기업 확인제도
- 03. 기업마당(Bizinfo)
- 04. 벤처기업 확인제도
- 05.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 06. 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제도
- 07.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 08. 중소기업 옴부즈만
- 09. 여성기업 확인제도
- 10.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 11.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12.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 13.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 ① 지원기관
 - ② 협회 및 단체
 - ③ 온라인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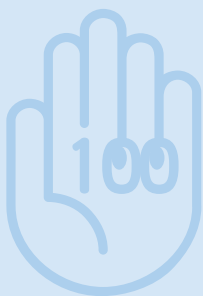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제 I 편

일반 중소기업

본편은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을 일자리·인력지원, R&D지원, 정책금융지원, 수출지원, 판로지원, 경영지원 등으로 분류해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과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①	일자리·인력 지원	3
②	기술(R&D) 지원	23
③	정책금융 지원	37
④	수출지원	49
⑤	판로지원	61
⑥	경영지원·동반성장 지원 등	71



I - 1

일자리·인력 지원

01.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4
02. 사회보험료 지원	5
03. ① 내일채움공제	6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8
0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
05. 고용창출장려금	10
06. 고용유지지원금	11
07. 근로시간단축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사업	12
08. 정규직전환자금	13
09.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14
1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5
1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16
12.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	17
13. 병역대체복무제도	18
14. 사업주-근로자 성과 공유	19
1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0
16.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	21

01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현황

- 30인 미만 소상공인 · 영세사업주 등에게 최저임금 120%이하 근로자 238만명에 대해 지원
- 5인 미만 15만원, 5~30인 미만 13만원 지원

● 신청대상

- 30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사업주

● 지원내용

-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1명당 월 13~15만원 지원(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비례 지원)
- 현금지급 및 사회보험료 대납(매월 자동지급)
-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 신청대행 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사업주)

2. 신청서 심사
(근로복지공단)

3. 지급
(근로복지공단)

신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www.jobfunds.or.kr)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044-202-7787)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월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금액

- 5인 미만 : 보험료의 90%
- 5~10인 미만 : 보험료의 80%
- *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

②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19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액

- 5인 미만 : 보험료의 60%
- 5~30인 미만 : 보험료의 50%

③ 4대보험 신규가입 시 세액공제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고용기업

● 지원금액

- 보험료 사용자 실부담금의 50% 세액공제

신청

근로복지공단(total.kcomwel.or.kr)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03-①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업)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가입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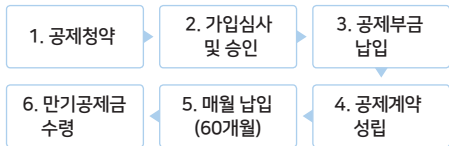
- (가입기간) 5년(최초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납입금)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천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비율로 납입

● 지원내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납입금액의 25%)
- (근로자)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 지원절차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기업은행

문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03-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업) 중소기업
- (근로자)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15~34세 이하)

* 군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여 최대 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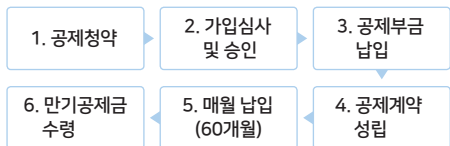
● 가입요건

- (가입기간) 5년
- (공제납입금)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적립

● 지원내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납입금액의 25%)
- (근로자)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 지원절차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문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03-③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 개요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일정기간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3자 공동적금(2년형, 3년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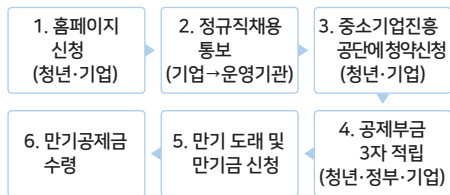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정규직 취업 청년(만15~34세) 및 채용기업(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원칙)

● 지원내용

- (2년형) 청년300+정부900+기업400=1,600만원
* 단, 기업은 2년 500만원 지원금 받고, 이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3년형) 청년600+정부1,800+기업600=3,000만원
* 단, 기업은 3년 750만원 지원금 받고, 이 중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지원절차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문의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콜센터
(☎ 1350 → 2번 → 5번)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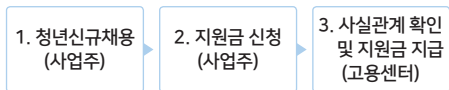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업주

● 지원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4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05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 월 30~60만원, 1년간 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근무체제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
- 월 60~70만원, 1년간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월 30~60만원, 2년간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 월 40~80만원, 1년간 지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산업구조의 변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와 함께 근로자에게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8호 요건

② 고용유지 조치계획의 신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

③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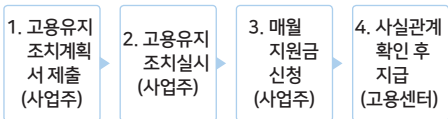
④ 계속고용의무 준수: 고용유지 조치기간+그 이후 1개월 까지 소속근로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금지

● 지원내용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휴업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등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2/3) 지원(1일 한도 6.6만원)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2/3)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 보험연도의 기간 중 180일까지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전국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부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9, 7223)

07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근로시간 줄이기로 기존 일자리에 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 교대제 도입,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 1~3년 지원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 (설비투자비 융자) 고용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시 투자비의 2/3범위내에서 최대 50억 지원

● 지원절차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비공모형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일자리 순환제 : 공모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사업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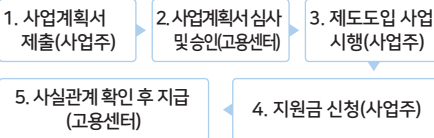
● 지원요건

- ①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 ② 6개월 이상 상시적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 ③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 ④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⑤ 기존 동종·유사 업무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 :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 (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전국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부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9, 7223)

09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할 수 있게 하거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규고용)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사업주
- (전환)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신규고용) ▲ 인건비 : 근로자 임금의 80% 한도로 월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월 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전환지원) ▲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 임금감소 보전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
 - * 주15시간이상 25시간이하 : 월 최대 40만원
 - * 주25시간초과 30시간이하 : 월 최대 24만원
(단, 임신근로자는 주15~30시간 : 월 40만원)
- ※ 초등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도 지원
- ▲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임금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기업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1. 제도 도입·시행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사업주)

3.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10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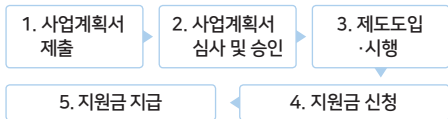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내용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인원한도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 지원절차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1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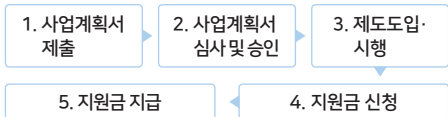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금 용도

- [정보시스템] 구축형 그룹웨어, ERP, 원격접속,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
-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컨설팅]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 지원절차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12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이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
공급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양성	지역 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공과대학 4학년 학생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기업(기업부설연구소) - 대학원(학과) 간 컨소시엄

● 지원내용

①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 (채용대상)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 (지원내용) 기업별 2명, 기준연봉의 50%, 최대 3년
* (기준연봉) 석사:20백만원, 박사:25백만원(연차별 차등지원 예정)

②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 (채용대상) 대기업·대학 등의 연구경력이 학사는 10년,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
- (지원내용) 기업별 1명, 계약연봉의 50%, 최대 3년
* (계약연봉) 최대 5천만원

③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 파견

- (파견대상)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연봉의 50%, 최대 3년
- (신청기간) 상시

④ 지역 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 공대생을 지역 中 소 R&D 현장실습(4개월) 지원

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대학원-中 소 컨소시엄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

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 042-481-6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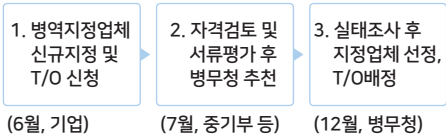
13 병역대체복무제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받을 경우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역 대신하여 연구·제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개요 및 지정요건

구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활용목적	제조, 생산업무	연구개발
지정업체 신청요건	공장,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이상 법인(산학협력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편입가능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 중견기업은 5인이상
요원 편입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보충역은 조건없음	석사학위 이상 * 보충역은 학사이상
근무기간	34개월 * 보충역은 23개월	36개월
접수 및 추천기관	중기부, 복지부 등 10개 기관(업종별)	과기정통부

● 지원절차



신청

중기부, 복지부 등 추천기관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에서 신청

문의

(총괄)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369)

14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정부지원정책 참여시 우대합니다.

● 지정제도

- 성과공유기업(연중 수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정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을 확인하여 지정
- 지정시기 : 연중 수시(기업이 신청하면 확인)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9.11월 예정)

- 신청대상 : 성과공유기업
- 지정방법 : 성과공유기업 중 성과공유 및 인재육성(교육 훈련, 워라밸, 우수 노사문화)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하여 선정(연간 200개)

- 존경받는 기업인('19.12월 예정)

- 신청대상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지정방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 최우수 기업을 평가하여 선정(연간 10개)

● 지원혜택

- 고용영향평가 배점 부여(20점,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적용)
- 일관지원사업 지원자격 부여
- 병역지정업체 가점 부여(5~10점)

신청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in.mss.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 042-481-4365)

1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중소기업과 소속근로자가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시 국내여행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 근로자 참여조건(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없음(단, 기업 대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소속 기업, 근로자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 (여행적립금)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적립금사용)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지원절차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14)

16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중소중견기업과 디자인 인력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디자인 역량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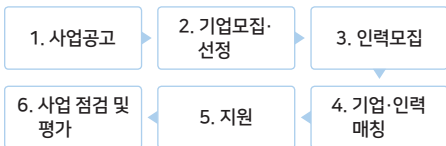
● 신청대상

- (기업)중소중견기업
- (인력)신입 및 경력 디자인 인력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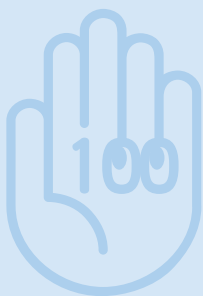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 기업과 디자인 인력의 매칭을 통한 채용지원
- 지원 디자인 인력의 인건비 보조*
*신입/주임/선임/책임 등 직급별 기준 인건비의 50% 이내 지원
- 디자인경영 등 관련 교육 제공

● 지원절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044-203-4234)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지원실
(☎ 031-780-2128)



I - 2

기술(R&D) 지원

17.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24
②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25
1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6
1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27
20. 산학연 Collabo R&D사업	28
21.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	29
22.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0
2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1
24.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융합R&D)	32
25.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33
26. 지역기업 R&D지원사업	34
27.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35

17-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 '14 ~ '18년 누적 7,800개

● 신청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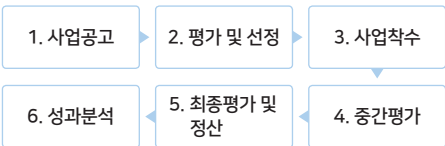
● 지원내용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 지원내용

- 신규구축 : 미 구축기업 대상 최초 구축 비용(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 고도화지원 : 기 구축기업 대상 고도화 비용 (기업당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지원 (30~50%))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it.smplatform.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2-481-4438)

17-②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가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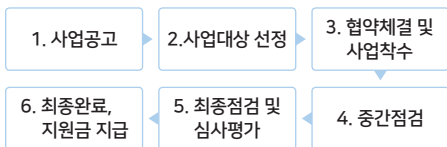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유형2-C는 중견기업 제외)

● 사업유형

유형		지원대상	지원금액	규모
유형1	A	중간1수준	최대1억원	50社
	B	기초 수준	최대 6천만원	150社
유형2	C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최대 2천만원	300社

※ 세부지원내용은 연도별 공고문 참조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확산추진단
(☎ 02-2124-4372)

1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국내수요처과제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신청대상	개발제품에 대한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정부지원	최대 2년, 5억원(총사업비의 60%이내)
수요처	총사업비의 15% 부담(현물 10%, 현금 5%)
공고시기	1차(1월), 2차(5월)

● 해외수요처과제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신청대상	해외수요처의 '기술개발요청서류'를 보유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최대 2년, 5억원(총사업비의 65%이내)
공고시기	1차(1월), 2차(5월)

● 민관공동투자과제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신청대상	개발제품에 대한 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정부지원	최대 2년, 5억원(총사업비의 37.5%이내)
투자기업	최대 2년, 5억원 (총사업비의 37.5%, 중견기업은 30%이내)
공고시기	1차(1월), 2차(5월), Fasttrack(수시)

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관리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582)

1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기존 제품 및 공정개선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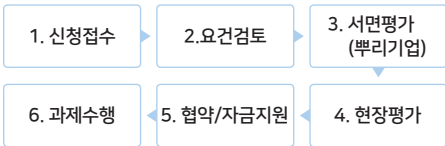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제품·공정개선) 3년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정은 직접생산기업)
- (뿌리기업공정)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지원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존제품 개선 및 제조공정개선 기술개발 자금(1년, 0.5억원)
- (뿌리기업공정)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금(1년, 1억원)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관리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8955)

20 산학연 Collabo R&D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술개발 수행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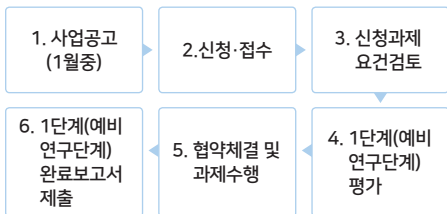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또는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2단계 신청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함

●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및 조건
단계별	(1단계) 사업화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연구단계 지원
	(2단계)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단계 지원
지원규모	(1단계) 8개월 이내, 0.5억원 이내
	(2단계) 2년 이내, 2~4억원 이내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75% 이내
참여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현금 40%이상)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관리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역량 있는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소과정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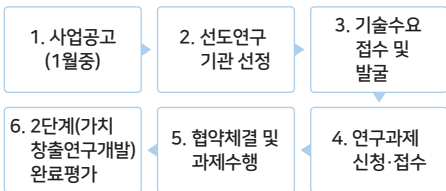
● 지원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및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단계	지원대상	지원조건
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 진단 (90개사 선정)	1개월, 2백만원 (정부지원 100%)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 지원 (36개사 선정)	최대 1년, 3억원 (정부지원 75%이내)
3단계	수요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21개사 선정)	최대 1년, 1.5억원 (정부지원 65%이내)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관리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mtech.go.kr)
단, 연구기관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22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나노융합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대학 등에 R&D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분야

-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화학공정소재,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지능형로봇, 첨단장비,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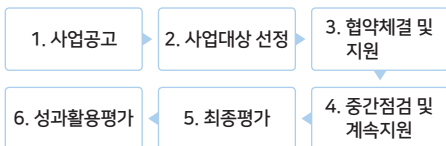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공고시 과제별 지정)
-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중소·중견기업 원칙

● 지원내용

- 민간매칭(사업비의 33~67%이내) 필수
- 해당 R&D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비용(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기술도입비 등) 제공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인건비 제공
- 특허청 IP-R&D 연계 서비스 제공
- 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 연계 제공

● 지원절차



신청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온라인 신청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044-203-45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02-6050-2125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대기업

● 지원분야

- (소재부품패키지형) 소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개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연계를 통한 소재부품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지정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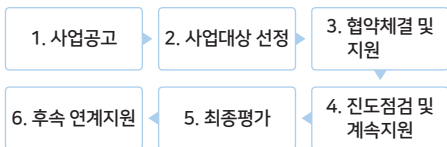
* 정부가 공고한 8개 과제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소재부품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개 이상 기술 결합, 업종 연계 및 산업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 단기 기술개발 지원 (품목공모)

* 정부가 공고한 38개 품목

*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유치 필요

● 지원절차



신청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 온라인 신청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
(☎ 044-203-4262)

24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융합 R&D)

인공지능(AI) 기술의 로봇 적용 확산을 위해 지능정보 로봇 융합 기술개발(R&D)을 지원합니다.

● '19년 기술개발(R&D) 지원과제

- (과제1) 불확실한 지도기반 실내외 환경에서 최종 목적지 까지 이동로봇을 가이드 할 수 있는 AI 기술개발
- (과제2) 조립 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물품을 조립하는 로봇을 위한 AI 기술개발(챌린지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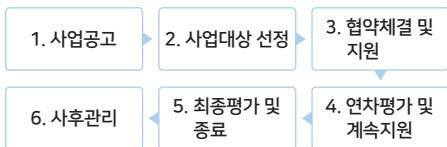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산·학·연 등 제한없음

● 지원내용

- (과제1) 연구개발비(R&D) 15억원(1개) 지원
- (과제2) 연구개발비(R&D) 3.5억원(4개)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팀
(☎ 02-2110-1613)

25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실험실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창업)한 초기 기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사업화 R&D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계획

- (사업화R&D지원) 12개 기업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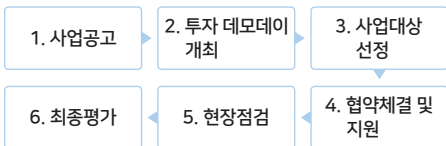
- 공공기술을 이전(창업)한 기업 중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

● 지원내용

- 우수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지원

● 지원절차



신청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www.compa.re.kr)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 02-2110-2481)

26 지역기업 R&D지원사업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R&D)

-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우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 지원 (18년 194개사 지정)

구분	꼭 알아야할 내용
정부지원	1년, 3억원(총사업비의 70%)이내
신청대상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우수기업
공고시기	19년 1월(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구분	꼭 알아야할 내용
정부지원	2년, 연 2억원(총사업비의 70%)이내
신청대상	14개 시·도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 협약기업)
공고시기	19년 1월(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R&D)

-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 기업 등과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

구분	꼭 알아야할 내용
정부지원	1년, 2억원(총사업비의 70%)이내
신청대상	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공고시기	19년 2월(예산 미소진시 추가 공고)

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1679)

27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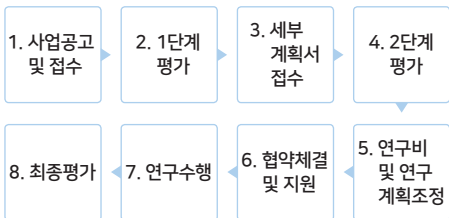
● 신청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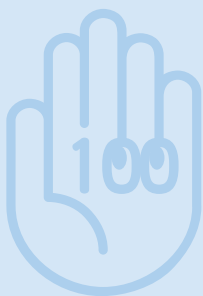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75% 이내 (최대 2~4억원)

● 지원절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044-203-2417)



I - 3

정책금융 지원

28. 정책자금	
① 신성장기반자금	38
② 긴급경영안정자금	39
③ 투융자복합금융	40
29. 보증지원	
① 기술보증제도	41
② 신용보증제도	42
③ 지역신용보증제도	43
30. SW지식재산권(IP)평가 보증	44
31. 문화산업완성보증	45
32. 매출채권보험 제도	46
33. 온렌딩대출	47
3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48

28-①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기업의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혁신성장유망)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 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 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 (대출한도) 잔액기준 60억원 이내(지방소재 70억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방법

-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sbc.or.kr)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재해피해 복구 등 중소기업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의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하거나 피해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용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 * 재해 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방법

-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sbc.or.kr)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28-③ 투융자복합금융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있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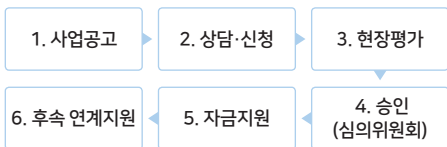
● 지원방식

- 성장공유형 : 전환사채 인수
- 성장공유형 : 스케일업금융(회사채 인수)
- 이익공유형 : 융자 후 성과배분이자 수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지원방식별 상이
(대출기간) 3~7년 이내(거치 1~4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 스케일업금융은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등

● 지원절차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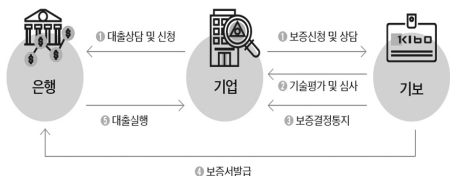
중진공 지역본(지)부(www.sbc.or.kr)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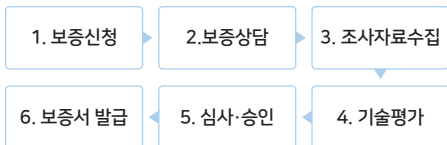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 보증절차



신청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문의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 1544-1120)

29-② 신용보증제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기관 현황

- 전국 107개 영업점 및 8개 영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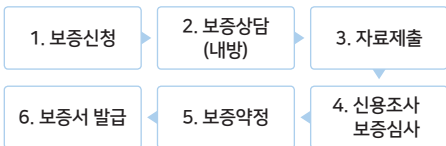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중소기업 (단, 보증지원 타당성이 낮은 일부업종 제외)

● 지원내용

- (한도) 일반보증한도 30억원
(단, 타 보증기관 이용한도 차감)
- (보증료율) 0.5~3.0%
- (기타)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신청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문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고객센터 1588-6565)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규모

- 보증잔액 21.4조원으로 운용('19년도)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도박·사행성사업,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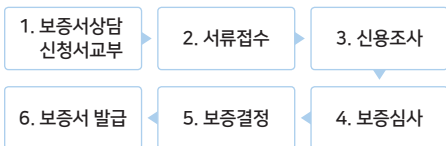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 신청

● 지원절차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30 SW지식재산권(IP) 평가 보증

SW지식재산권(특허,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평가 및 평가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은 SW지식재산(IP)에 대한 가치평가 보증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평가수수료를 지원

● 지원대상

- SW분야 특허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유한 중소 SW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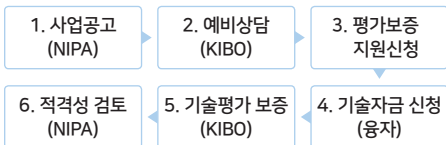
※ SW분야 지식재산권 보유조건

- 신지식재산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완료 건
- 산업재산권(특허)등록 완료 또는 심사진행 중인 건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 지원규모

- 44개기업(건별 가치평가금액 이내로 보증지원)

● 처리절차



문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43-931-5376
기술보증기금 ☎ 02-2155-3773 및 지점
(예비상담)

문화상품 제작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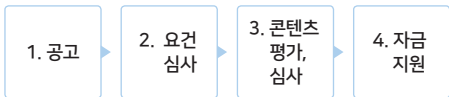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지원내용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지원절차



32 매출채권보험 제도

중소기업이 거래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보험가입을 통해 대신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지원기관 현황

- 전국 10개 신용보험센터 및 107개 영업점

● 신청대상

- 전 업종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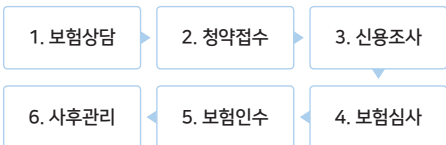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지원내용

- 상거래 외상대금에 대한 보험 인수를 통해 가입기업의 외상거래 위험관리 지원

- 거래처 도산 등에 따라 대금회수가 늦어지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연쇄도산 방지

● 지원절차



신청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문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 고객센터 1588-6565)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중개금융기관(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정책자금입니다.

● 지원대상(2018.12월 현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온렌딩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년이상 10년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영자금 : 1년이상 3년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 리스자금 : 1년이상 5년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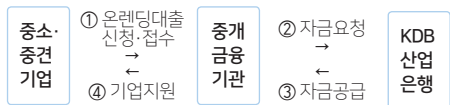
- 온렌딩 기준금리* + 온렌딩 가산금리**

* 온렌딩 기준금리 : 산업은행이 매월 5일 www.kdb.co.kr 에 고시

** 온렌딩 가산금리 : 중개금융기관이 결정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지원절차



신청

전국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점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문의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0582

3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가입대상** *유흥업종 등 일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공제부금** *매월 일정금액 납부, 최고 납부한도 1억원
 - 월부금액 : 10~300만원 중 선택
 - 납부기간 : 20~60개월 중 선택
- **대출대상**
 -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 가입업체
- **대출내용** *금리와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구분	부도대출채권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대출 사유	• 매출채권이 부도 등으로 회수 곤란한 경우	• 상업어음과 수표를 현금화 하려는 경우	•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금잔액의 3~7배 • (담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금잔액의 1.5배~3배 이내 • (담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대출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이자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8.38% *담보대출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9.63% *담보대출 4.5%
대출 기간	• 3년(6개월 거치)	• 180일 이내	• 1~3년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상담센터
(☎ 1666-9988, 교환 2번)

I - 4

수출 지원

3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0
36.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51
37. 온라인수출 지원	52
38. 수출유망중소기업	53
39. 수출바우처	54
40.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55
41. 해외기술교류 지원	56
42. 해외지사화 사업	57
43. 무역보험 지원	58
44. 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	59

3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

- 내수기업 혹은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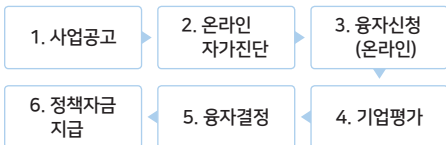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 지원내용

- 수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 운전자금(최대 5억원)
-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 도입자금(최대 20억원)

* 사업장 구입 및 건축 자금은 제외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375)

36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CFDA, UL 등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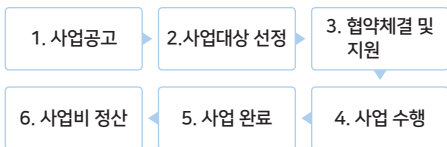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내용

-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또는 70%를 1억원 한도로 지원

* 매출액기준 30억원 이하 기업 : 70% 지원, 30억원 초과 기업 : 50% 지원

● 지원절차



● 신청기간 연3회(3·6·9월)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등

신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문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2~8)

37 온라인수출 지원

온라인수출을 활용해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국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업종·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 등 지원
- 국내 셀러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출 실행 지원(교육, 판매실습 등)
-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활용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상품페이지 제작, 배송, CS 등)
- 온라인 수출물량 집적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
- IT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품목·테마별 온라인 전시회 상시 개최 및 오프라인 수출상담 연계

● 신청·접수

- (기간) '19.3월 중 공고 예정
- (서류) 사업신청서, 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공고문 참조

신청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 055-751-9753, 02-2130-1482)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에서 우대지원을 합니다.

● 지정대상

-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 신청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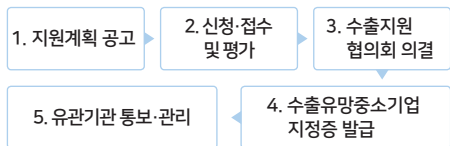
- 지정 후 2년간,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 지원근거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중기부 고시)

● 지원절차

- 매년 상·하반기 2회 공고, 14개 수출지원센터에서 평가·실시



신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39 수출바우처

수출규모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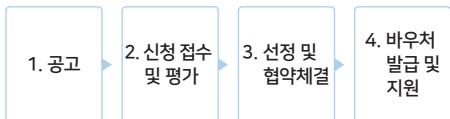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	최대 3,000만원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3,000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실적 '10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5,000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실적 '100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최대 8,000만원
글로벌 강소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수출 500만불 이상 등) 중 유효한 기업	최대 1억

● 지원내용

-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디자인, 홍보·광고,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패키지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문의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40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대기업 해외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활용방법

- 대기업 자체 모집을 통해 구성한 컨소시엄(대기업과 5개 이상 중소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동반진출 과제를 선정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 (한류연계행사,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 등)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해외 거점	①공동 수주 지원, ②대기업 브랜드·인증 활용 진출, ③해외법인설립 지원, ④유통망 활용 판매 지원, ⑤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 판로개척, ⑥현지 법인을 통한 수출 확대, ⑦기 진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판로개척, ⑧전시회 참가 및 사후관리 등	• 기업당 최대 23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해외 홈쇼핑	①홈쇼핑 방송지원 ②현지화 조사단 ③신시장 개척단	• 기업당 최대 28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한류 연계	①글로벌 한류행사 연계 ②콘텐츠 연계	• 기업당 최대 12백만원, 소요비용의 60% 이내

● 신청기간 연중

신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www.win-win.or.kr) 공고(이메일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 042-481-1656)

41 해외기술교류 지원

외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 교류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합작투자 등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270개사 내외 ('18년 250개사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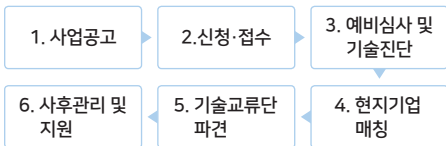
● 신청대상

- 기술이전 가능한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해외기업과의 기술교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기술교류 대상국가 : 베트남, 이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페루 등

● 지원내용

- 기술 진단, 현지기업 발굴·매칭, 기술거래 전문가 지원 등 기술교류 사업화 전 과정 지원

● 지원절차



신청

해외기술교류온라인플랫폼(www.g-tep.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
(☎ 042-481-6868)

해외에 지사를 설립할 여력이 없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1년간 수출 및 해외진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 컨설팅 제공

1) 진입 : 기초마케팅지원(기초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등)

2) 발전 : 수출성약지원(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물류
통관 자문 등)

3) 확장 : 수출현지화지원(해외투자유치,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 지원절차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연초)

- 신청기업이 서비스(프로그램)와 수행기관(OKTA,
KOTRA, 중진공) 선택

신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OKTA (☎ 031-927-9218)
KOTRA (☎ 02-3460-7438)
중진공 (☎ 055-751-9680)

43 무역보험 지원

무역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 수출 중소기업

● 수출단계별 이용 가능한 무역보험

수출 단계	지원서비스
수출상담·계약 대응	■ 수입자 신용조사
상품수출 후 수출대금 미회수 대응	■ 중소기업플러스보험 ■ 단기수출보험(일반상품)
원자재 조달, 생산 등 자금조달 대응	■ 수출신용보증(선적 前)
외상거래시 자금 유동성 문제 대응	■ 수출신용보증(선적 後) ■ 수출신용보증(Nego)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 이용절차

- (수입자 신용조사) 신청 → 조사·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
- (보험) 신청 → 수출자 신용조사 → 거래수입자 등록
→ 책임금액 선택 및 보험료 납부
- (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 꼭 알아두세요!

- 상품별 신청서류, 지원내용, 지원절차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후 신청

신청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sure.or.kr)

문의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44 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

스포츠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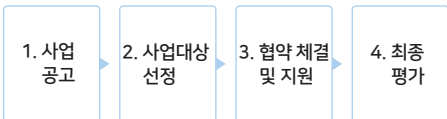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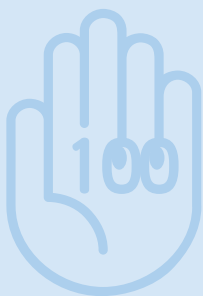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 2,000만불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교육기관

● 지원내용

분야	주요내용
해외진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해외타깃시장 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조사) 및 연결
해외시장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및 제품 홍보 홈페이지 제작• 기업 및 제품 홍보 카달로그 제작• 광고물(온라인, 인쇄, 영상매체) 제작•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 지원절차





I - 5

판로 지원

45.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62
4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3
47.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64
48.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65
49.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66
50.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67
51. 마케팅역량강화	68
52. 아임쇼핑 정책매장	69

45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공기관별 발주명, 발주금액, 시기 등 입찰정보와 입찰 참여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까지 제공되는 공공기관 입찰 정보 포털사이트입니다.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본 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

- **이용 절차**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 공공기관(승인 후 이용 가능), 업체(승인 과정 없음)

- 중소기업 회원은 공장등록 등 업체정보* 입력

- * 해당 기술력 인증자료 사본, 생산정보 증명서류 등

- 회원가입 후 업체정보 변경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승인 필요

- **주요 서비스 내용**

-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금액, 시기 등 입찰정보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안내

-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기업일반현황 정보 제공

- 공공기관 입찰시 필요한 각종 확인서 온라인 발급

- * 직접생산확인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연계정보)

- 성능인증·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소액수의계약 신청

공공기관은 중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제품을 조달해야 합니다.

* 제한경쟁입찰 : 사전에 지역, 참여자격 등을 제한하는 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 : 미리 복수의 응찰자를 지정하는 입찰방식

● 지정현황 : 212개 제품 ('19~'21)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정보조회' 참조
- 중기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용 자재의 경우 공공기관이 분리 발주하여 직접 구매

● 지정요건(아래 두가지를 모두 만족)

-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10억원 이상

● 지정된 제품의 유효기간 : 지정하는 날부터 3년

● 지원절차

- (신청) 관련조합·벤처협회·이노비즈협회 또는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신청
- (접수·추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접수하여 공청회 등 의견조정 후 중기부로 추천
- (지정 고시) 중기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후 지정

47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지원

공영홈쇼핑의 방송·온라인 쇼핑채널을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우수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 운영방안

- (판매수수료율) 평균 20%
- (상품 편성)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 입점절차 및 신청방법

- 공영홈쇼핑 입점문의는 온라인(www.immall.co.kr)을 통해 신청·상담

* 아임몰 접속(www.immall.co.kr) → 몰하단 "입점안내" 코너에서 온라인 신청

입점절차	내용
입점제안	협력사 입점 신청
제안검토	상품별 MD 자료 검토
MD상담	협력사와 MD간 상담 진행
상품평가위원회	선정위원 평가를 통한 방송제품 선정
품질검사	인증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협력사 등록/계약	입점서류 제출 등 계약체결
방송판매	제품판매 진행

신청

공영홈쇼핑 홈페이지(www.immall.co.kr)의
입점안내 참고

문의

공영홈쇼핑 (☎ 02-6350-8888~9)

48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6개 인증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성능인증, 구매조건부·민관공동 투자 제품, 융·복합기술개발제품
-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 기술표준원 : NEP, NET
- 기획재정부 등 : 개발선정품, 녹색인증제품 등

● 활용방법

- 기술개발제품 관련 인증*을 취득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지방청에 우선구매를 요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참고

● 관련 세부 지원시책

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창업기업·첫걸음기업 등의 초기판로지원과 기술개발 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제품을 구매
-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절차 : (공고형) 공고 → 신청·접수 → 규격검토 → 제품평가 → 제품선정
(소액) 공고 → 신청·접수(상시) → 제품평가 → 제품선정

② 성능인증

-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절차 : 신청 → 적합성심사·공공기관의 규격확인·공장심사·성능검사 → 인증서 발급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 성능인증일로부터 3년

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4569)

49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특별법인,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 중소기업제품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 50% 이상
-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 10% 이상
-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 기술개발제품 정보(16종)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 여성기업

-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 물품·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5천만원까지 허용
- * 여성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

● 장애인기업

- 공공기관 구매 비율 : 1% 이상
-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5천만원까지 허용
-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4468)

50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자금·인력이 부족해 자체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A/S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신청 대상

-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참여 제품군(17개군) :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 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생활용품군, 패션잡화군, 뷰티군, 홈인테리어/홈데코군

* A/S 상담대행료의 30%는 기업자부담(정부 7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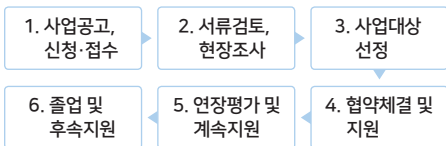
● 참여 제한제품

- 국내 제조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해외 OEM, 단순 수입, 도소매업 등)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의류 등 일회성·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 기존 공동A/S센터 지원받은 타사의 동일제품

● 지원 내용

- 콜센터 및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문의, 불만, 민원 처리 및 관리
- 제품 수리·교환·반품에 대한 A/S 처리 지원
- A/S 인식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실무역량강화 교육 제공
- 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을 DB화하여 제공

● 지원절차



신청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imstars.or.kr)

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사업1팀
(☎ 02-6678-9341, 9342)

51 마케팅역량강화

마케팅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 매체홍보 등 기업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성, 기술력 등이 뛰어난 기업 또는 조합·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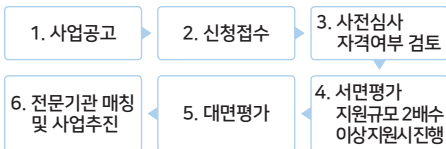
● 참여 제한제품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

● 지원 내용 : 아래 분야 중 기업 '자율선택형' 패키지식 지원(정부지원 최대 70%, 50백만원 한도)

- (마케팅전략수립) 제품진단, 유통채널 MD(바이어) 및 전문가 코칭 등 마케팅전략수립 지원
- (빅데이터분석·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체 맞춤형 데이터 제공
- (제품개선) 보유제품에 대해 성능 향상·디자인 개발·품질 개선 등 지원
- (브랜드개발)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BI·CI) 개발 등 지원
- (매체홍보) 국내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 지원절차



● 신청 기간 : 2월~3월(연 1회 심사·선정)

신청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imstars.or.kr)

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사업1팀
(☎ 02-6678-9346,9344)

전국 주요 상권에 개설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통해 상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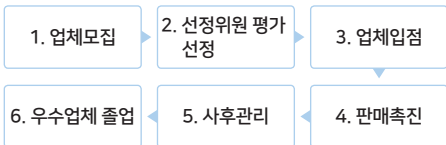
● 판매장 위치

- 행복한 백화점(서울 목동), 현대백화점(판교), 신세계 백화점(영등포), 인천공항 면세점(T1동편, T1서편, T2), 한화면세점(서울63빌딩), SM서울(서울 종로), 신세계 면세점(서울, 부산), 현대면세점(무역센터점, 부산역, 화성 휴게소 등

● 신청대상

-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기술력 및 아이디어 제품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 지원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격월 단위 심사·선정)

※ 꼭 알아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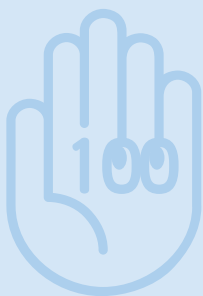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 판매적합성(30), 상품성(30), 마케팅력(30) 등 선정평가(70%) 및 일자리 평가(30%)을 종합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
- 행복한백화점 정책매장 입점상품 및 아이디어가 뛰어난 제품

신청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imstars.or.kr)

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망운영팀
(☎ 02-6678-9722,9723)



I - 6

경영지원·동반성장 지원 등

53.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72
54.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지원사업	73
55.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74
56.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75
57. 수·위탁기업 분쟁 조정	76
58. ①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77
② 기술보호 전문가 컨설팅	78
③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79
④ 기술분쟁 조정·중재	80

53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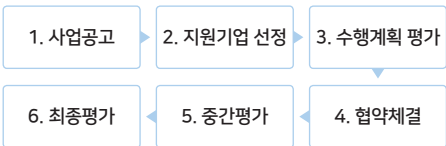
● 컨설팅 지원분야

- (특화형) 미래성장산업, 제조업서비스화, 사업전환, 중소기업간 협업,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 (규제대응)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제, 화학물질관리 대응 지원
- (정보보안) 정보보안,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대응 지원

●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 년2회(2월, 5월)/ 최대 15백만원, 정부지원비율 90% (최대 5개월)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
(www.smbacon.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8965)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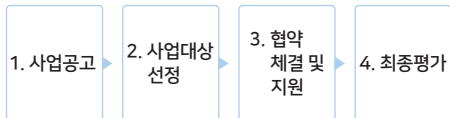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해당 업력 3년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 제품 제조업,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교육기관

● 지원내용

분야	주요내용
경영지원	경영전략, 인사, 노무, 법률 등
제품경쟁력	제품기획, 제품개발 등
원가생산성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품질관리 등
영업마케팅	브랜드개발, 디자인, 영업력강화 등
IPO	기업공개, 주식상장 지원 등

● 지원절차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내국인으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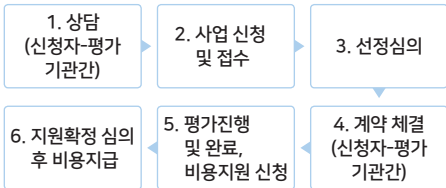
● 지원내용

-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 지원 총액은 1건당 5천만원 이내,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
(평가비용의 30% 및 부가세 신청자 부담)

● 평가결과 활용

- 현물출자, 기술 거래, 기술 인증, 홍보(마케팅), 사업 타당성 평가 등

● 지원절차



신청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 02-3459-2953)

전국에 설치된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대상

- 수탁·위탁거래(또는 하도급거래) 관계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간 불공정한 수·위탁거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피해 구제방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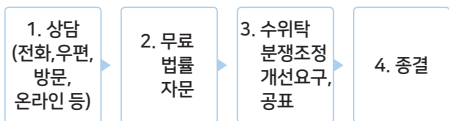
* 신고 및 분쟁조정, 피해 구제방법 등에 대한 상담, 무료 법률 지원 제공

- 수탁·위탁거래로 인한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 수탁·위탁거래 관계 위반행위는 사실조사 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및 공표

● 신청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전화, 우편,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청

*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 <http://poll.mss.go.kr>



※ 꼭 알아두세요!

- 신고 접수시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1668)

57 수·위탁기업 분쟁조정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감액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 또는 위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수·위탁거래 기업간 분쟁발생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 조정범위

- 약정서 미교부
- 납품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미지급
- 부당 대금감액·결정, 부당수령 거부
- 부당 기술자료 유용

● 조정절차

1. 조정 요청 (신청서)	2. 검토 (의견 청취)	3. 사실 조사 (필요시)	4. 자율 조정 권고	5. 협의회 상정 (조정 권고)	6. 조정 종료
재단	재단	중기부	재단	재단	재단

* 근거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470)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042-481-1668)

58-①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중소기업 기술침해 시 신속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을 통해 피해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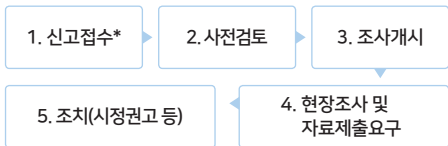
● 신청대상

- 기술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

● 조사내용

- 비밀로 유지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한 행위에 대한 조사

● 조사절차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신청

서면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58-② 기술보호 전문가 컨설팅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방법과 침해행위 대응 요령에 대해 법률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 법무지원단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에 일대일로 매칭하여 기술보호·유출방지 법적 대응력을 지원

구분	꼭 알아야할 내용
신청대상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술보호·지재권 분야의 법률자문 지원 - 거래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 기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규모	중소기업 70개사(최대 연 5백만원)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기업의 현장에 방문하여 보안 수준 및 실태,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

구분	꼭 알아야할 내용
신청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사전진단) 현장진단, 보안교육 등 기초자문 (심화자문) 사전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자문
지원규모	(사전진단) 최대 3일(무료) (심화자문) 최대 7일(소요비용 75% 지원)

신청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문의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58-③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지원합니다.

● 기술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를 통해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구분	꼭 알아야할 내용
신청대상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임치대상	(기술상 정보) 생산·제조방법, 설계도 등 (경영상 정보) 재무, 회계 등 영업기밀서류
임치수수료	신규 30만원(1년) / 갱신 15만원(1년)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창업·벤처·혁신형 중소기업은 수수료 1/3할인, 창업3년 이내 무료(창업기업 지원 서비스사업활용시)

신청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 (www.kescrow.or.kr)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737)

● 기술지킴서비스

내부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취약점 모니터링, 보안솔루션 등 지원

구분	꼭 알아야할 내용
신청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수요기관의 이상징후 및 기술유출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지원규모	무료(단, 장비 임대료 지원기업 부담)

신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www.kait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 02-3489-7050 ~ 3)

58-④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업간 기술분쟁 발생 시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분쟁사건에 대한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조정·중재 소요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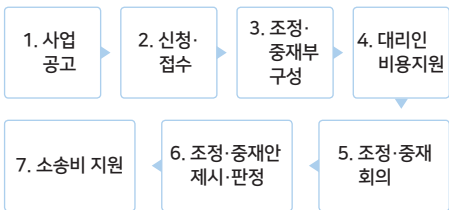
● 지원규모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

- 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 최대 500~1,000만원

* 조정·중재 수수료는 신청인 부담

● 지원절차



신청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문의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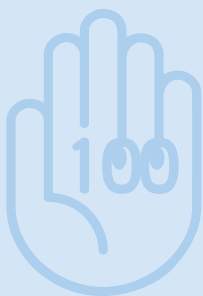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제 Ⅱ 편

창업·벤처기업

본편은 창업초기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업 교육 및 창업공간 제공,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후속지원사업, 그리고 재도전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양한 사업화 지원사업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 창업기반시설(제도) 및 교육 83
- 2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95
- 3 창업 후속 지원 105
- 4 재도전 지원 113



II - 1

창업기반시설(제도) 및 교육

59. 창업보육센터	84
6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85
61.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86
62. 창조경제혁신센터	87
63. 판교밸리 창업존	88
64. 메이커 활성화 지원	89
65. 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	90
66.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91
67. 실전창업교육	92
68. 창업기업지원서비스	93

59 창업보육센터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초기창업 기업에 사업공간 및 경영·기술 컨설팅 제공 등 기본 보육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초기(예비)창업자(창업후 3년 이내), 창업보육센터 <참고> 창업보육센터(BI) 지정·운영 현황('18.12월)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BI수	32	17	1	12	22	12	13	14
지역	충남/세종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BI수	18	51	5	14	15	15	17	4

* 상세정보는 BI_Net시스템(www.bi.go.kr) 참조

● 지원내용

- (기업) 사업공간(기본 3년, 최대 5년), 경영·기술 컨설팅 및 교육·멘토링 등 기본 보육 지원
- (BI)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리모델링 지원

● 지원절차

- (기업) BI별 자체 홈페이지(또는 지역언론) 모집(보육) 공고 → 입주(보육)심사 → 입주, 보육 지원
- (BI) 경영평가(운영비, 사업비) 안내 및 사업공고(리모델링, 신규사업자) → 평가 → 대상 선정 및 지원

● 신청기간 (기업) 연중 수시, (BI) 1~3월

신청

(기업) 개별 창업보육센터,
(BI) K-Startup(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1, 3968)

경력·네트워크·기술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사업공간 제공, 교육·상담 등의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창업 후 3년 이내)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회원가입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전국 27개소 내외

* 상세정보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지원내용

- 사무(작업) 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 세무·회계·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등 경영지원
- 마케팅, 투자유치, 시장조사 등 사업화지원

● 신청기간 : 수시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별 공실발생 시 수시 모집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창업기업) 등

※ 꼭 알아두세요!

- 선정은 창업의지,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서류 및 발표평가로 진행

신청

해당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3)

61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무 공간,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 지원내용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전국 55개

* 사무공간, 경영지원(세무·회계·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등) 지원

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실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최대2천만원)

● 신청기간 : 수시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센터별 공실발생시 수시모집

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19년 2월~3월 예정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1688)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 전국 17개소

* 상세정보는 홈페이지(ccei.creativekorea.or.kr) 참조

● 지원내용

- 창업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 대회, 창업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지역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이 상이

● 신청·접수 : 수시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방문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접수(프로그램별 상이)

신청

해당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1692)

63 판교밸리 창업존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입주공간 제공
- 전문가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통·번역센터, 3D제작보육실, 글로벌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활용 지원

● 신규모집 : '19.12월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메이커의 혁신적인 창작활동과 동아리, 행사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민간·공공 기관 및 단체
- (메이커 문화확산) 메이커 활동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지원내용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장비 구입, 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 운영 등 소요비용
- (메이커 문화 확산) 메이커 창작활동, 동아리, 전문 인력 양성, 메이커 행사 등

● 사업공고 : '19.1월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추진역량, 입지·인프라, 사업추진계획 등
- (메이커 문화확산) 활동계획 및 역량 등(세부사업별 평가기준 상이)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 042-481-4580)

65 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

국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성공적 창업을 위해 온라인에서 맞춤형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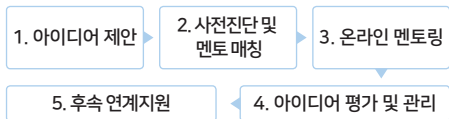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사업화 및 창업에 관심있는 국민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가 아이디어 수준별 맞춤형 멘토링 진행
 - (단순평가) 아이디어에 대해 진단 및 조언
 - (1:1멘토링) 멘티가 희망한 전문가가 30일간 밀착 멘토링 서비스 제공
 - (1:N멘토링) 여러명의 전문가가 30일간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지원절차



신청

아이디어마루 온라인플랫폼(www.ideamaru.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1688)

66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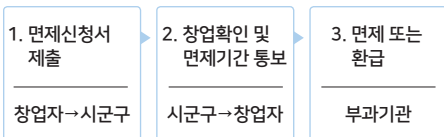
● 신청대상

-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지원절차



신청 관할 지자체 기업지원부서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042-481-4384)

67 실전창업교육

창업실습 교육과 MVP제작, 비즈니스모델 검증 등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 교육생 3,000명 내외, 시장검증 300명 내외(5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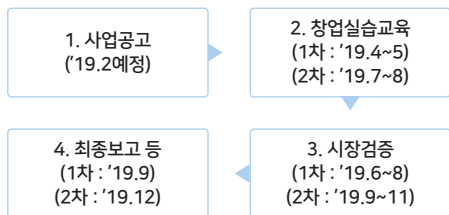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실습교육: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기본교육, 멘토링 등) 및 빌드업 프로그램(BM 구체화)
- 시장검증: 고객반응조사, 최소요건제품(MVP) 제작, BM 검증 등 지원

● 지원절차



신청

k-startup(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1629)

초기 창업자가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회계,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3년이내 창업기업('19년 매출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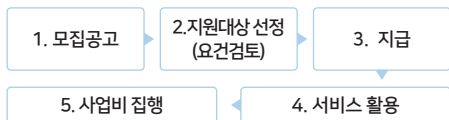
-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100만원 이내, 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 세무·회계처리*, 기술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세무회계: ① 기장대행수수료, ② 결산 및 조정수수료, ③ 회계 프로그램 등

** 기술보호: ① 기술임치 수수료, ② 기술임치(갱신) 수수료 등

● 지원절차



신청

k-startup(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8909)



II - 2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69. 초기창업패키지	96
70.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97
71. 창업도약패키지	98
72. 사내벤처 육성	99
73.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100
74.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101
7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102
76.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103

69 초기창업패키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초기창업자의 기술혁신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총 1,027억원, 85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대상

- 3년 이내의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자금 지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 이내), 맞춤형 교육, 투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 지원절차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62, 4386)

청년CEO들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화 과정 및 단계별 후속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총 922억원, 950개사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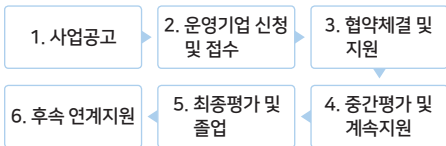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 창업 후 3년 이하인 기업의 대표자

● 지원내용

- 창업 준비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 및 장비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

● 지원절차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3991, 4409)

71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고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성장촉진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총 840억원, 1,000개사(팀)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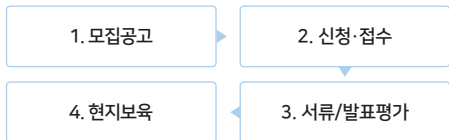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창업 후 3~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사업모델(BM) 혁신과 경영전략 멘토링, 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지원

● 지원절차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3991, 4409)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총 100억원, 100개사(팀) 내외 (최대 1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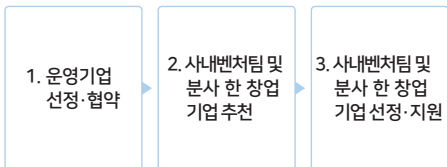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기업 내부의 사내벤처팀 및 분사한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운영기업이 발굴·추천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 R&D 자금 등 연계지원

● 지원절차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73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보육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총 24억원, 60개사(팀)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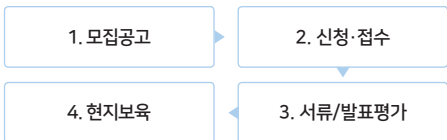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창업기업을 매칭하여 현지 보육 (1개월 이내)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지원절차**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74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로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 총 44억원, 40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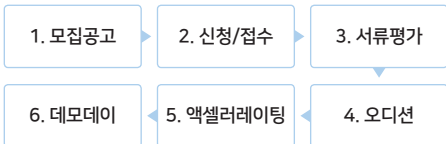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외국인(재외동포)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3.5개월),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오아시스 프로그램 운영, 공동사무공간지원, 데모데이, 상금지원

- **지원절차**



신청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7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성공벤처인, 엔젤투자자 등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엄선하고 선투자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총 1,621억원, 신규 250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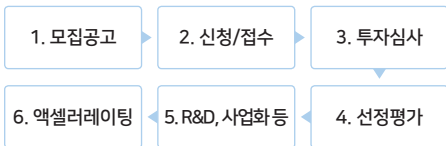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운영사 : 1억원 내외 엔젤투자 및 멘토링, 보육, 네트워킹 지원
- 정부 : R&D자금(최대 5억원),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비(최대 1억원) 지원,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 선택가능

● 지원절차



신청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문의

한국엔젤투자협회 (☎ 02-3440-7421~2)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8947, 4413)

76 K-Global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공모전)과 시제품 개발 지원, 기술·디자인·비즈니스 등 분야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기업,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학생 등

● 지원내용

- 디바이스 제작에 필요한 전문교육 지원
- 각 분야별 제품화 바우처 지원(시제품 제작)
 - * 제품기획, 디자인, PCB, 외형제작 등
-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후속지원
 - * 시제품 제작, 국내외 데모데이 참가 지원 등

● 지원절차

- 제품화 바우처 지원 및 교육

1. 신청·접수

2. 선정심사

3. 지원추진

- ICT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

1. 신청·접수
(전국 동시접수)

2. 선정심사
(지역, 본선, 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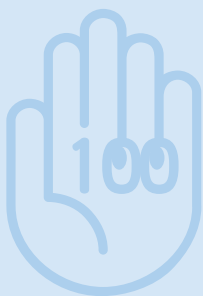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3. 후속지원
(데모데이 등)

신청

ICT 디바이스랩(device lab.kr)

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031-710-8706



II - 3

창업 후속 지원

77. 창업기업자금	106
78.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07
79. 벤처캐피탈 등 투자유치	108
80. 엔젤투자매칭펀드 활용	109
81.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110
82. 관광분야 창업·벤처기업 지원	
①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111
② 관광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112

77 창업기업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의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혁신창업지원)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및 자체 기술 등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등

● 용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 Δ 0.4%p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투자자금 7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잔액기준 60억원 이내(지방소재 70억원)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방법

-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용자대상결정 후 중진공에서 대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sbc.or.kr)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약 3,074개(신규 1,996개) 과제, 예산 3,73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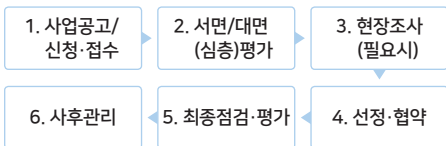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세부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창업기업과제
 - 디딤돌 과제 (최대1년, 1.5억원 이내) : 일반창업·여성·소셜벤처 기업 지원
 - 혁신형 과제 (최대2년, 4억원 이내) : 고기술·유망 기술 등 4R 분야 기업 지원
 - 선도형 과제 (최대1년, 3억원 이내) : 혁신성장 선도 분야 기업 지원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TIPS) (최대2년, 5억원 이내) : TIPS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79 벤처캐피탈 등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지역 엔젤투자 기반 구축, 해외 투자유치 연계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 및 엔젤 투자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벤처캐피탈·엔젤 등 투자자와 기업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상담회, IR, 지역 엔젤포럼, 외국투자기관 투자유치 행사 등

● 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 및 투자자 등

● '19년 계획

- 엔젤투자를 위한 상담회(12회), 컨설팅(4회), IR(10회) 개최(예상)
* 엔젤투자 부문은 사업자 공모 후 확정
- 벤처투자를 위한 벤처로드쇼 3회, 벤처투자사랑방 12회, 벤처투자컨벤션 1회 실시
- 외국투자기관협의회 및 국제교류행사 실시

신청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 엔젤투자는 사업자 공모 후 확정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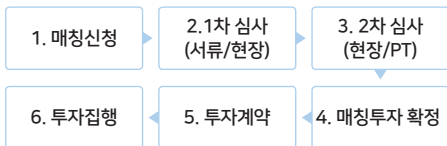
(☎ 042-481-1647)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추가로 투자를 지원합니다.

- **매칭펀드 규모** : 1,920억원
- **신청대상**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엔젤투자자 (개인, 법인 등)
 - 크라우드펀딩(주식형) 성공 기업

- **지원내용**
 - 창업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액 대비 1배 ~2.5배 기업에 매칭 투자
 - 기업당 매칭한도 : 3억원
 - 매칭 신청 접수 : 연중 매월

- **지원절차**



신청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042-481-1646)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지원 및 우수상품 홍보를 위해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운영합니다.

● 벤처나라 운영현황

- 월별 벤처나라 모집신청을 통해 산업부, 광역자치단체 등 22개 추천기관과 협업하여 기술·품질이 뛰어난 창업·벤처기업 발굴

* '18.12월말 기준 602개사 3,187개 상품 등록, 누적 공급실적 18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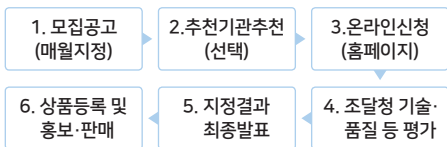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에서 직접 생산 또는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지원내용

-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에 상품등록 및 구매 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지원(연 12회)
- 입찰참가자격등록부터 벤처나라 상품등록까지 조달 등록 관련 교육(연 6회)
-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부스 전시지원

● 지원절차



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
(<http://venture.g2b.go.kr:8311/index.jsp>)

문의

조달청 구매총괄과 벤처나라 담당
(☎ 042-724-7447)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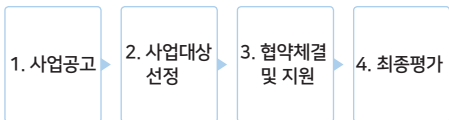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예비관광벤처 :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 관광벤처 : 창업 3년 이상 기업

● 지원내용

-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비 지원
- 관광특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벤처 아카데미 운영
- 세무·회계·법률 관련 전문컨설팅 지원
- 관광벤처사업자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 지원절차



신청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
(www.tourventure.or.kr)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044-203-2860)

초기관광기업이 인터넷 등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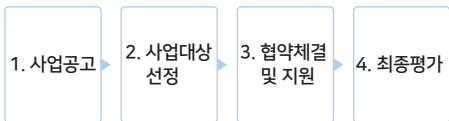
● 신청대상

-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 기업 등

● 지원내용

- 클라우드펀딩 등록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기업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기본 점검, 펀딩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자문 등
- 펀딩 중개 수수료 및 클라우드펀딩용 IR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 지원
- 참여기업 발굴 및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 지원
- 펀딩 성공기업 대상 지속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액셀러레이팅, 투자자문위) 추진 등

● 지원절차



II - 4

재도전 지원

83. 재도전성공패키지	114
84. 재도전기술개발사업	115
85. ① 재기지원보증제도(신보)	116
② 재창업재기지원보증(기보)	117
86. 재창업자금	118

83 재도전성공패키지

성실 실패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 기업인을 발굴하여 재창업 교육부터 사업화 및 연계지원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재도전 성공패키지 절차

구분	진행과정
일반형	BM고도화(3백만원 한도) → 사업화(최대 60백만원 한도)*
투자형	민간투자 → 사업화(1억원 한도) → 후속(50백만원 한도) → R&D(1.5억원 한도)

* 사업화 자금(전환평가를 통한 차등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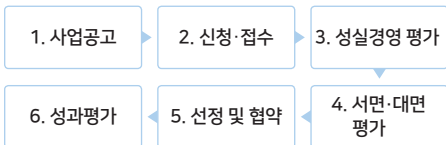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예비)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지원내용

- 재창업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실무교육 제공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재창업사업화 지원
- 재창업자 전용 사무공간 지원

● 지원절차



신청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4474)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 27개 과제(예산 38억원)

● 신청대상

-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7년 이하) 또는 지원 결정이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예비 재창업자

* 실패 사업체의 폐업 완료 후 재창업자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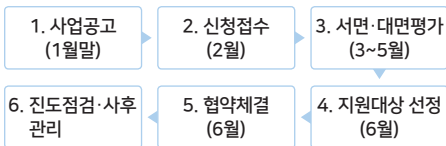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까지 지원

- 정부출연금 이외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6844)

85-① 재기지원보증제도(신보)

실패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채무상환 및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신용보증기금 단독채무자로서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인 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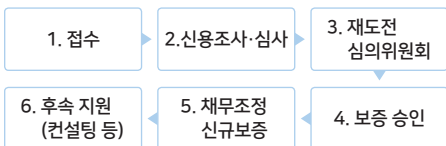
- 신용보증기금 구상채무에 변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채무 변제를 위한 보증과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을 동시에 취급

[보증비율 : 구상채무 변제 보증 (100%)

신규자금 지원 보증 (80% 이상)

보증료율 : 최대 1.2%]

● 지원절차



신청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문의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6565)

85-② 재창업재기지원보증(기보)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경영재기를 위해 재창업자금 용자를 위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총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실패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신규 창업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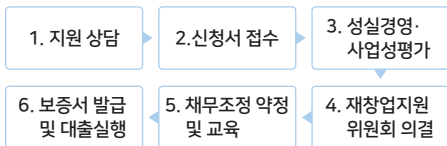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채무조정) 대위변제 후 1년 경과 및 상각 채권의 경우 75% 채무감면
- (자금지원)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 소요자금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이내)

● 자금지원방식

- (대출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책임비율) 기보/신보/중진공 = 40/40/20

● 지원절차



신청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문의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1544-1120)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86 재창업자금

실패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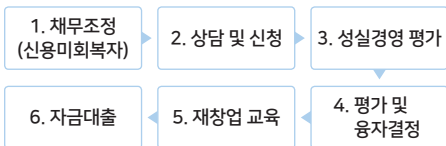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자/신용미회복자로 재창업 준비 중 또는 재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포함)
- (대출한도) 잔액기준 60억원(지방소재 7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지원절차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온라인 신청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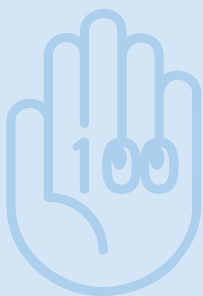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제3편

소상공인·전통시장

본편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비용 감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소공인 지원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지원 121
- 2 소상공인 재기지원 129
- 3 전통시장 지원 135



Ⅲ- 1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지원

87. 소상공인 역량강화	122
88. 소상공인 교육지원	123
89. 제로페이	124
90. 소상공인정책자금	125
9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126
9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127

87 소상공인 역량강화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가 상품, 마케팅, 고객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일반컨설팅)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역량 jump-up 프로그램) 일반컨설팅 수혜 업체 중 매출액 감소 또는 영업실적 부진 소상공인(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컨설팅 내용
일반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 컨설팅 기간: 최대 4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불가 	경영컨설팅 -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 정상화(업종전환)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기술컨설팅 - 업종별 전문가, 명장·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및 컨설팅
역량 jump -up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 지원 • 위기진단 후 연계지원: 최대 4백만원 	- 위기진단을 통한 연계지원으로 리모델링·브랜드 개발 등 소상공인에 향상된 경영환경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금 소진시까지)
- (일반컨설팅) 신청접수('19.2~)→사전진단→컨설팅지원→사업성과 확인
- (역량jump-up 프로그램) 신청접수('19.2~)→위기진단→연계지원→사업성과확인
- 연계지원 : 정책자금, 업종전환, 무료 법률상담 등

신청

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con.seda.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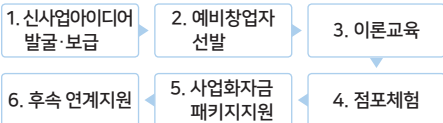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이론교육) 창업절차, 세무·회계 등 창업을 위한 경영 및 전문교육 150시간 내외 실시
- (점포체험교육) 이론교육 수료생에게 체험 점포에서 경영체험과정 제공 및 멘토링 지원(16주)
- (창업멘토링) 점포체험단계부터 성공창업까지 개인별 전담 멘토링 지원(점포체험교육기간 중 4일 이내)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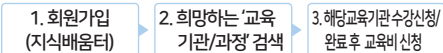
②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 및 경영개선교육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교육프로그램**

- (전문기술교육)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 지원
- * 교육비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 이내(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동일과정 수강 불가))
- (경영개선교육)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무료교육

● 지원절차



신청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89 제로페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의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가맹점으로 등록한 소상공인

● 결제수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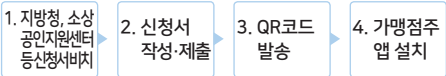
- 연매출액 8억원 이하(0%), 8~12억원(0.3%), 12억원 초과(0.5%)

● 가입절차

-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지방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결제방법

- 가맹점 QR 방식 : 결제 앱을 실행 → 매장에 비치된 QR코드 촬영 → 결제 금액 입력·확인

- 소비자 QR 방식 : 결제 앱을 실행 → QR코드(바코드) 생성 → 매장 내 POS 등을 활용하여 결제

문의 제로페이 콜센터 (☎ 1670-0582)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1조 9,500억원, 60,000여개 업체

● 신청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3년 이상 사업 영위 소상공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 영위 소상공인
-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 또는 청년고용(1년 이내) 소상공인 * 청년 : 만 39세 이하
- (소상공인긴급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용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
*매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mas.or.kr) 게시
- 대출기간 : 5년 이내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 자금별 대출기간, 대출한도 상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평가/대출 실행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361)

9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규모

-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예산 129.5억원)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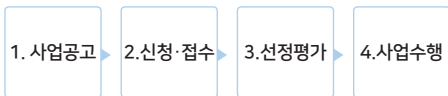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경영애로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 지원절차



신청 전국 34개 특화지원센터(127쪽 참고)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18년말 기준)

	시·도	시·군·구	분야	대표전화
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 및 장비	070-4170-5973
2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 및 장비	031-354-3641
3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031-913-6611
4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032-234-5911
5	경기	안양시(호계1동)	전자부품	031-423-6726
6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031-8067-5040
7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조)	031-776-2692
8	경기	군포시(당정동)	금속가공	031-454-4881
9	경남	김해시(진례면)	도자기	055-345-6161
10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062-228-2348
11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062-236-5013
12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053-661-2357
13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제조(안경테)	053-355-0994
14	대구	서구(평리동)	의류봉제	053-721-7442
15	대구	중구(대봉동)	의류봉제	053-783-3399
16	대전	동구(정동)	인쇄	042-226-5556
17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속가공	042-939-4827
18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042-629-7728
19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051-631-2050
20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051-636-7510
21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 가방, 신발	051-890-2334
22	서울	중구(을지로동)	인쇄	02-2277-2922
23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02-741-5366
24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02-2634-7727
25	서울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02-3672-4348
26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02-919-9623
27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02-741-8755
28	서울	서초구(반포4동)	섬유제품(커튼·블라인드)	070-4848-0972
29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02-865-9213
30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032-723-9982
31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063-219-0341
32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063-652-1030
33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041-750-1653
34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043-225-1028

9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 브랜드·마케팅·장비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신청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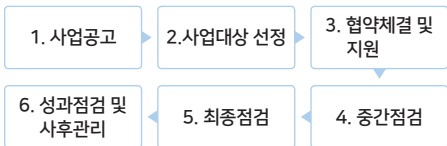
*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된 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브랜드, 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 등),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공동R&D 등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억원 한도지원

● 지원절차



신청

소상공인지원센터 (☎ 1588-5302)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4495)

Ⅲ- 2

소상공인 재기지원

93. 희망리턴패키지	130
94. 재창업패키지	131
9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132
96.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33

93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337억원, 22,000여개 업체

● 신청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또는 기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재기교육 : 민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취업 기본역량 (면접, 이력서),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 상담 및 활동계획 수립,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와의 연계 지원

●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컨설턴트 및 재기교육 지원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규모

- 75억원, 6,000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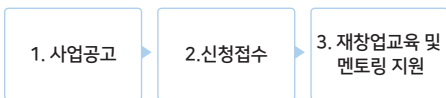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 이론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수행 : 민간 교육기관)
- 창업멘토링 :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멘토링 지원(수행 : 멘토단)

● 지원절차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9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신청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 02-2124-3341~3)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96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29억원, 20,000여개 업체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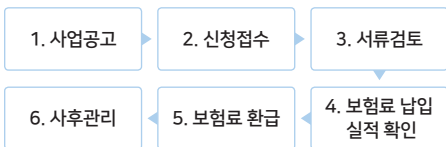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한
1인(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최대 3년)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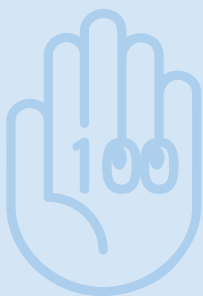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361)



Ⅲ- 3

전통시장 지원

9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36
9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37
99. 시장 경영혁신지원	138
100. 온누리상품권 발행	139

9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 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시설의 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430곳(1,23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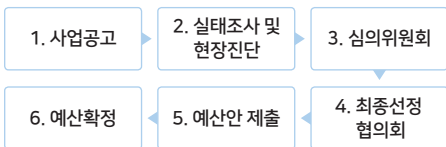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 된 곳

● 지원내용

- 아케이드, 진입도로,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 시설물 개보수(교체, 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상징조형물 등)
- 화재방지 안전시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 지원절차



신청 관할 지자체(시·군·구)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16)

98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립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 **지원규모** : 45곳(1,42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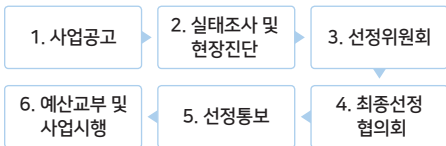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지원내용

- 공용주차장 건립 또는 개보수 지원
- 부지확보 등 주차장 건립이 곤란한 경우 전통시장 인근 공공·시설주차장 이용보조

● 지원절차



신청 관할 지자체(시·군·구)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16)

99 시장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바우처 지원, 특성화시장, 청년 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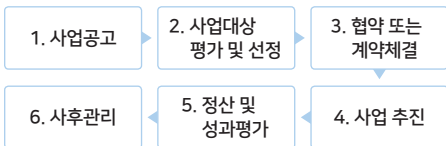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 조직을 보유한 곳

● 지원내용

-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상인 교육, 공동마케팅 등)
- 특성화시장(희망사업 프로젝트, 특성화첫걸음)
-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상권활성화구역 활성화 지원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지원절차



신청

우편,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일부사업 온라인 신청)

* 접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사업별 상이)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17, 4547)

시중 14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가능하며,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지원합니다.

● 발행규모

- '19년 2조원 규모 발행예정

● 상품권 종류

- (지류)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 (전자) 5만원권, 10만원권

● 상품권 구매처

- (지류) 14개 금융기관

*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기업,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전자)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 우리, 대구, 부산, 경남, 기업, 농협

●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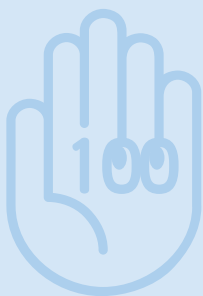
● 가맹점 등록절차

가맹신청서 제출(개별점포·상인회→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가맹점 자격요건 심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가맹점 승인 및 등록안내(지방중소벤처기업청→개별점포·상인회)

* 가맹점 관련 문의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록

도움이 되는 제도 및 지원기관

01. 중소기업 범위 기준	142
02. 중소기업 확인제도	143
03. 기업마당(Bizinfo)	144
04. 벤처기업 확인제도	145
05.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146
06. 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제도	147
07.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148
08. 중소기업 옴부즈만	149
09. 여성기업 확인제도	150
10.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151
11.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152
12.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153
13.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① 지원기관	154
② 협회 및 단체	155
③ 온라인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156

01 중소기업 범위 기준

영리기업이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 적용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업종별 매출액 400억~1,500억원 이하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포함, 비영리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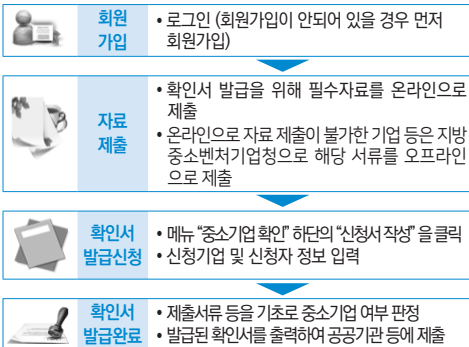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신청서류

- 직전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상공인)

● 발급절차



● 유효기간

-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문의 중소기업청 정책분석과 (☎ 042-481-8913, 1669)

03 기업마당(Bizinfo)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적시에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 이용대상

- 중소기업 대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청년 사업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인 등 중소·벤처 기업 및 소상공인

● 주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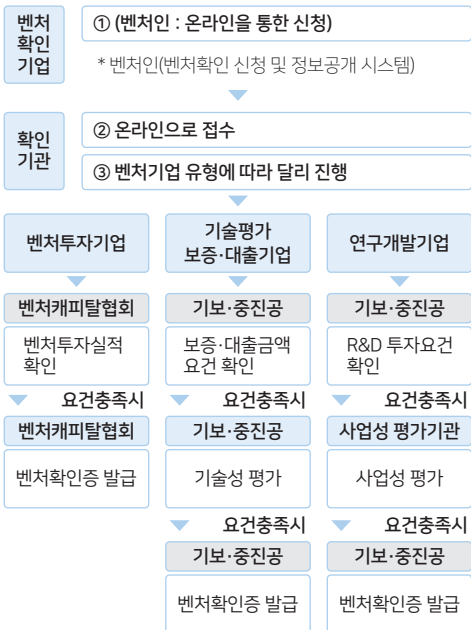
- (정책정보 제공) 분야별 지원사업, 최신 정책뉴스, 정책브리핑(동영상) 등을 웹사이트, 모바일앱(app), 문자, E-mail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
- (기업애로상담) 분야별 전문가(경영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24시간 이내 온라인으로 답변하여 애로 해소
- (부가서비스) 대화형 정책검색(오대리의 정책톡),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및 기업업무서식(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제공

● 이용방법

- 인터넷 : 기업마당 홈페이지
(<http://www.bizinfo.go.kr>)
- 모바일 : 앱 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다운로드
<http://m.bizinfo.go.kr> 접속

기술성·사업성이 높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절차



신청 벤처기업확인 홈페이지(<http://www.venture.or.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4425)

05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나 개별 사업에서 아래와 같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분류	내 용
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거나 창업 후 3년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75%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거나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면허세 면제 *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벤처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에 한함)
금 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보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 7명, 대기업 10명

* 기타 특허우선심사, 입지, 창업(휴·겸직) 지원 등

신청 벤처인(www.venturein.or.kr) 온라인 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4425)

06 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제도

이노비즈와메인비즈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15조에 의해 발굴·선정하여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이노비즈는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메인비즈는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 제도 안내

구분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3년 이상의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불건전 소비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및 신용관리정보대상 기업 등 제외 	
선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기업 등록후 자가진단 • 현장평가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실시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 (1,000점 만점) 이상 및 개발기술 평가결과 B등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 메인비즈넷 (www.mainbiz.go.kr) 기업 등록후 자가진단 • 현장평가 자가진단결과 600점 이상일 경우 평가기관에서 현장 평가 실시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0.2% 감면 및 전액보증(시중협약 15개 은행),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보험료율 10% 우대 • 대출금리 우대(농협,산은) • 코스닥 상장조건을 자본금 15억원이상으로 완화 •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기술임치 수수료 1/3 감면 • 정책자금, R&D, 병역특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특허출원 우선심사 등 정부 지원시책 참여 시 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1% 차감, 부분보증비율 85%, 서울보증보험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대출금리 우대(농협,산은) • 정책자금, 방송광고비 70% 지원, 병역특례업체 추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정부 지원시책 참여 시 우대 등

신청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2-481-4459

07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경 법규 위반 확인서, 성과 총괄표 양식 등 첨부하여 그린넷(www.greenbiz.kr) 온라인 신청

● 우대사항

분야	우대사항
금융	• 민간은행 대출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대, 기술보증 우대 • 기업은행 IBK 녹색기업대출 우대 등
기술	• 중기부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 시 가점 등
공공구매	•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 납품 및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시 우대 등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등
수출지원	•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선정시 가점 부여 등 • 수출성공패키지 및 해외수출 인큐베이터 지원업체 선정시 가점 등 •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 세부내용 그린넷 홈페이지(www.greenbiz.kr) 참조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목소리 및 권익을 대변하는 규제개선 전담기관입니다.

• 개요

-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적 전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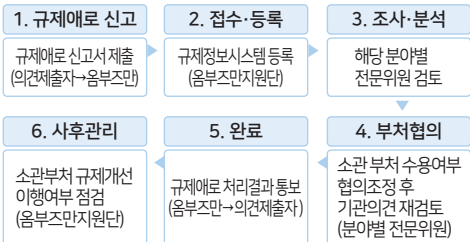
• 기능

-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건의, 권고, 이행 점검, 적극행정 면책 등

• 규제애로 신청방법

- 중소기업 ombudsman 홈페이지(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bizhomin@korea.kr), 팩스(02-2100-4941),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

• 처리절차



신청

중소기업ombudsman 홈페이지
(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

문의

중소기업ombudsman지원단 (☎ 02-2100-4900)

09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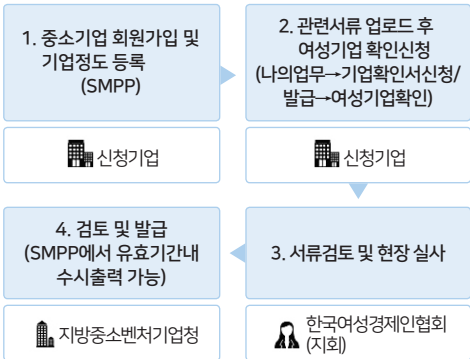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신청서류

- (공통) 여성기업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지분관계도, 주주명부(주식회사) 등
- (개인)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 발급절차



● 유효기간

- 여성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

신청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2-481-4363, 4376)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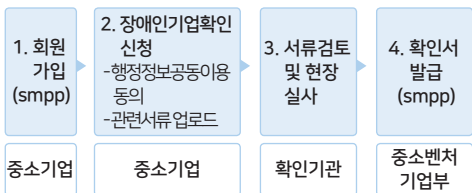
● 신청대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

● 신청서류

- 공통
 - 장애인증명서 혹은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 3개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등본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발급절차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신청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6)

11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선정 제외합니다.

● 신청요건

- 상시근로자를 지난해보다 2%·4%(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법인·개인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원 이상인 경우는 4%, 3백억원 미만인 경우는 2%

● 지원대상

- 고용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수입금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법인세·소득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메뉴
- 서면 제출 :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 방문접수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 044-204-3304)
소득세과 (☎ 044-204-3263)

12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직원 고용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유예합니다.

● 신청대상 및 요건

- 조사착수연도 현재 상시근로자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이상 증가되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지방소재 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 신청절차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서식경로: 국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탭>세무조사 가이드북>해당 조사 종류별 서식을 다운

- 담당 세무관서에서 신청서 접수 후 요건을 검토하여 유예 여부를 통지

※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사전에 안내

신청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관서 및 담당자)

① 지원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등)	www.kicox.or.kr	070-8895-7000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www.sbc.or.kr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	www.semas.or.kr	1357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지원)	www.kodit.co.kr	1588-6565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www.kibo.or.kr	1544-112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지원)	www.koreg.or.kr	1588-736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및 정보화 지원)	www.tipa.or.kr	042-388-01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	www.keit.re.kr	1544-66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 지원)	www.kiat.or.kr	02-6009-3000
창업진흥원 (창업 지원)	www.kised.or.kr	1357
한국벤처투자(주) (벤처투자지원)	www.k-vic.co.kr	02-2156-2000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 지원)	www.win-win.or.kr	02-368-8799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 지원)	www.ksure.or.kr	1588-38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지원)	www.kotra.or.kr	1600-7119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로지원)	www.sbdc.co.kr	02-6678-9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 지원)	www.hrdkorea.or.kr	1644-8000
신용회복위원회 (재도전 지원)	www.ccrs.or.kr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도전 지원)	www.kamco.or.kr	1588-3570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www.klac.or.kr	132

② 협회 및 단체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02-2124-3114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02-6050-3114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1566-5114
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02-6331-7073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www.innobiz.or.kr	031-628-9600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www.mainbiz.co.kr	02-2230-2143
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www.kmtca.or.kr	02-569-8121
중소기업 융합중앙회	www.k-sca.or.kr	042-867-5506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www.womanbiz.or.kr	02-369-0900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02-3440-7460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www.koita.or.kr	02-3460-9114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www.kvca.or.kr	02-2156-2100
한국엔젤 투자협회	home.kban.or.kr	02-3440-7405
한국창업경영 컨설팅협회	www.kmcca.net	042-256-1072
한국창업 보육협회	www.kobia.or.kr	042-346-9600
한국장애 경제인협회	www.kdea.or.kr	02-6332-6711

③ 온라인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시스템명	홈페이지 주소
기업마당	www.bizinfo.go.kr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
k-startup 사이트 (창업지원정보 포털)	www.k-startup.go.kr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KIAT과제관리시스템	www.pms.re.kr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www.sme-expo.go.kr
수출인큐베이터	sur.ly/i/.sbc-kbdc.com
FTA종합지원센터	okfta.kita.net
Yes! FTA(관세청 종합솔루션)	fta.customs.go.kr
스마트공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it.smplatform.go.kr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중소기업 공공구매론	www.smpp.go.kr
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
워크넷(고용부)	www.work.go.kr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www.smbacon.go.kr
소상공인 통합교육시스템	edu.sbiz.or.kr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fund.kbiz.or.kr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
벤처기업 전문취업포털	www.v-job.or.kr
벤처확인·공시시스템	www.venturein.or.kr

중소기업 정책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업마당
(www.bizinfo.go.k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